문서번호	인사처-3359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7.04.24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67호

★팀장	인사처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	
협 조	기획조정실장			
	위원장			

2017년(2016년 실적) 성과급 일부 지급계획

2017. 4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| 인사처

2017년(2016년분) 성과급 일부 지급

▢ 지급근거

○ **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자체 평가급 지급 기준 통보 (행정자치부 공기업과-2287, 2016.6.20)**

- 자체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% 지급함. 또한 지급 시기는 기관별 예산사정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 지급가능하며, 경영평가 확정 통보 이전에도 지급가능 함.

○ **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 (제수당 지급기준)**

- 성과급 지급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함.

▢ 일부지급(안)

○ **지급율 : 50% -- 잔여분은 최종 지급율 결정 후 차등지급**

※ 서비스직은 당해연도 근무분(6개월분)에 대해 25% 지급하되 세부 지급기준은 전년도에 따름.

○ **지급대상 : 2,632명** ☞ **일반직(1급 본부장 포함) 및 서비스직**

※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름.

▢ 지급(예정)일자 : 2017.4.26(수)